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설명서-014호(2026.01.27)

하나은행

『희망저축계좌 I』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6.03.03 현재, 세전)

구 분	내 용	
상품특징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계약기간	3년	
가입금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기본금리	연 2.00%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최대 연 3.00%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① 급여 및 주거래이체 실적 1.50% ② 청약가입 및 보유 1.00% ③ 마케팅동의0.50%	
정부지원금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X	양도 및 담보제공(질권설정) 불가
일부해지	O	1회 가능
세제혜택	O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예금자보호	O	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 0, 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중도해지금리	기간 /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주1) x 경과율(주2) (단, 연 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 70% 적용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½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¼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설명서-014호(2026.01.27)

하나은행

『희망저축계좌 I』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희망저축계좌 I』
- 상품특징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이하 '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03.03 현재, 세전)

구분	내용		
가입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계약기간	3년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가입금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한도	당월 인정기간 內 최소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하 (당월 인정기간 內 최초 입금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자동이체	• 최소10만원이상 ~ 최대 50만원 범위내 만원단위로 등록 가능합니다. (적립한도 이내에서 가능)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적립중지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②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		
기본금리	연 2.00%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3.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내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1.5%)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주1)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회차 인정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 1회차 미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1.0%)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조회한 경우 **※오픈뱅킹서비스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기관추가및해당상품등록→하나원큐내'전계좌조회_오픈뱅킹'을통해정상조회시완료
마케팅동의 (연 0.5%)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주1) 급여 인정기준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해지방법

지방자치단체('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해지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 가능

중도해지금리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주3) x 경과율(주4) (단, 연 0.20% 미만 시 0.20% 적용)

(주3)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주4)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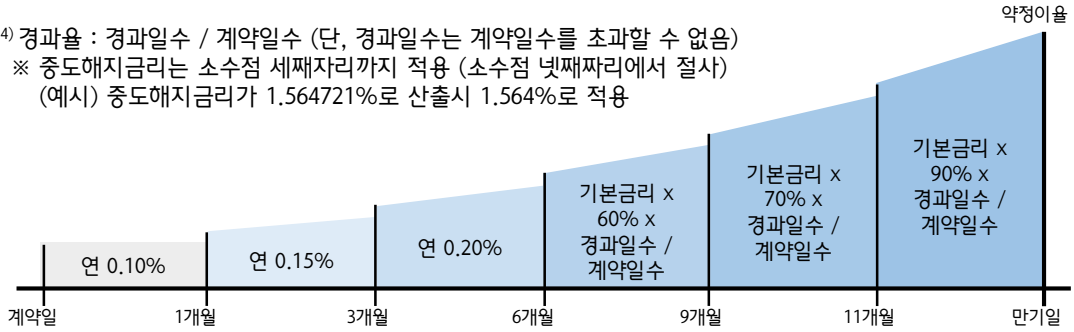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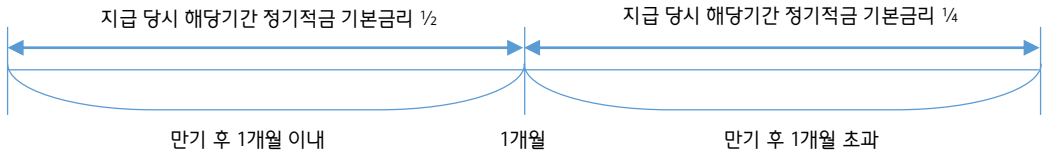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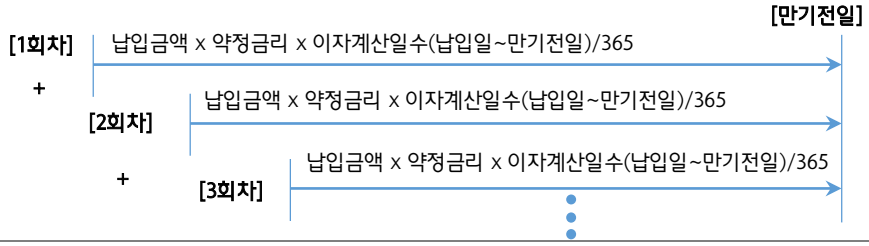

만기앞당김 지급	불가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1회까지 입금건별 균등 계산 방식에 따라 분할해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질권설정)	양도 및 담보제공(질권 설정) 불가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부가서비스 (수수료우대)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통장발행	고객이 적립하는 계좌는 통장 미발행 가능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3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 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내입니다.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이 예금은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